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

수신자 : 대한의사협회(1068202511)
(경유)

제 목 :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 일부 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5호(2019.7.31.) “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”에 따라 공고한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332호, 2021.12.23.)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개정 내용과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(<http://hira.or.kr>)에 게재 (- 알림 - 공지사항)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주요개정내용

2.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. 끝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

수신자

결재

담당 최심은

팀장 황정호

부장

대결12/23
박정혜

실장 연가

협조

시행 청구관리부-405

(2021.12.23.) 접수

()

우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

전화 033-739-5721 전송 033-811-7492 / cherryhush@hira.or.kr

/ 비공개(5)